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파워 e 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[채권]

2. 주요 변경내용: 자투자신탁 추가 등

3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하나 UBS 파워 e 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[채권]	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하나 UBS 파워 e 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[채권] 2.하나 UBS 글로벌인프라 3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글로벌인프라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: 자투자신탁 추가 등

3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하나 UBS 글로벌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[주식] 2.하나 UBS 월지급식글로벌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[주식]	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하나 UBS 글로벌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[주식] 2.하나 UBS 월지급식글로벌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[주식] 3.하나 UBS 글로벌인프라 3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제 19 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제 2 항 4.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	제 2 항 4.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이내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 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